

의 결



ACRC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0 - 489호

의 안 명 「중소기업 활동의 불편·부담 요인 개선」

대상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관세청

의 결 일 2020. 10. 26.

주 문

「중소기업 활동의 불편·부담 요인 개선」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환경부장관, 관세청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10월 26일

위원장 전현희

위원 이건리

위원 권태성

위원 김기표

위원 김태웅

위원 김의환

위원 강재영

위원 정정미

위원 오완호

위원 이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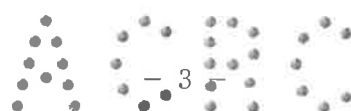
위원 박홍규

위원 임혜자

위원 임성문

위원 방이엽

위원 손난주



중소기업 활동의 불편·부담 요인 개선

- 뿌리산업, 수·출입, 환경오염 측정대행업 분야 -

2020. 10.



국민권익위원회

A C B C

❏ 목 차 ❏

I. 추진배경 및 경과	1
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1. 뿌리기업 확인서 신청·발급 절차 개선	2
2.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 절차 간소화	5
3. 공동보세구역으로 특허 받은 시설의 사용요건 구체화	8
4. 보세구역 장기 보관된 물품의 불합리한 처리 관행 개선	12
5. 환경오염 측정대행 기업의 운영 요건 완화	14
III. 조치 사항	18

I. 추진배경 및 경과

-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 국정과제 : 40.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 추진배경

-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일본의 소재·부품 수출규제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 그동안 정부는 민간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유예, 규제 일몰제 확대 등 기업 현장의 애로 요인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 그러나, 각 부처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과도한 불편·부담을 호소하는 민원 빈발
 - FTA 협정에 따른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이나 뿌리기업 확인 신청과 관련하여 서류 제출 번잡, 수수료 과다 징수 등 불편·부담 요인 상존
- ※ (뿌리기업)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을 활용하는 업종
- 공동 보세구역 특허나 환경오염 측정 대행업 영위 시 공동의 시설이나 장비·인력 등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업체나 사업 각각마다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함으로써 추가적인 비용 부담 유발
- 이에 따라, 뿌리산업, 수·출입, 환경오염 측정대행 분야 중소기업 경영 현장의 불편·부담 요인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실태조사(6~7월), 개선방안 마련(8월), 기관협의(9월), 위원회 상정(10월)

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뿌리기업 확인서 신청·발급 절차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 현 황

-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확인서를 발급하여 뿌리기업의 외국인 고용 우대를 통한 인력난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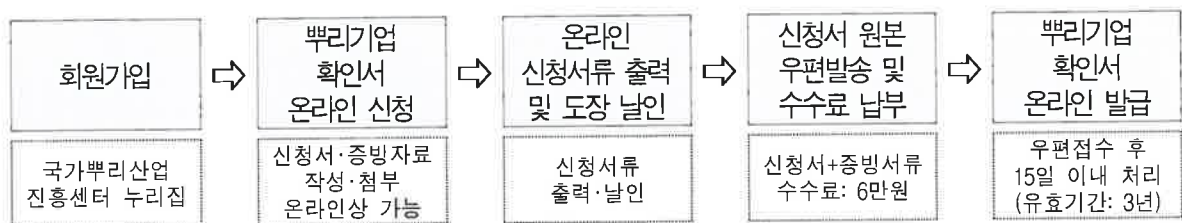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을 의미하며, 위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 또는 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뿌리기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 (신청 자격) 공장등록증상 공장의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이 뿌리산업의 범위에 속하는 사업장

- (확인서 발급) 발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심사하여 발급

* 발급신청서(원본), 매출액 명세서(원본), 매출액 명세 검토의견서(원본), 품목 설명서(원본), 공장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원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 신분증(사본), 수수료 입금확인증

< 뿌리기업 확인서 신청·발급 절차 >



- (지원 내용) 국가 지원 사업 등* 자격 확인, 신규 외국인 고용 한도 1명 추가** 지원 및 체류자격 변경(E-9→E-7-4)***시 우대

* 제조혁신 기술커넥트 지원사업, 뿌리기업 자동화 첨단화 지원사업, 공통제조공정 에너지 진단 보조사업,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사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육성사업 등

** 최대 고용인원은 제조업 고용허가인원 대비 추가 20%까지

*** (단순노동인력→숙련기능인력)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응시자격 부여, 뿌리산업 6년 이상 근무 시 근무경력 최대 15점 부여

□ 문제점

○ 확인서 발급 신청 절차 복잡 및 처리기간 지연

-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발급기관의 누리집상에서 신청서와 증빙 자료 작성 후 이를 출력하여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

※ ‘여성기업확인서’, ‘뿌리기술전문기업지정신청’ 등의 경우 온라인 신청·접수 가능

- 신청서류가 발급기관에 우편으로 도착된 시점부터 15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확인서 발급에 장기간 소요

< 관련 민원 사례 >

- 인터넷시대에 뿌리기업확인서 신청을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 직접 방문신청서 하거나, 신청서류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뿌리기업들에 불편과 금전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고, 진흥센터에서 확인서 발급이 너무 오래 걸려 외국인 인력확보 등 기업 활동에 장애가 있으니, 개선해 달라. (국민신문고, 2019.09.)
- 뿌리기업확인서 신청시 공공기관의 행정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까지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처음 발급받을 당시에는 무료로 확인서를 발급하던 것을 6만원의 신청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영세한 뿌리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음. (국민신문고, 2020.01.)
- 사업자등록증,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으로 뿌리기업 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도 진흥센터에서는 뿌리기업 확인을 위해 10여 가지가 넘는 서면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신청 후 2~3일 이면 뿌리기업 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15일 이상 처리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당초 무료였던 신청수수료가 6만원으로 과도하게 인상되어 영세한 뿌리기업에 불편·부담을 주고 있음. (권익위 실태조사, '20.6.)

○ 법령에 근거 없이 과도한 발급수수료 징수

- 당초 확인서 발급은 무료였으나, '18년 내부 규정(산업부 고시) 개정을 통해 심사비 명목으로 과도한(확인서 1건당 6만원) 수수료 징수

※ 각종 세제지원 등을 위해 발급 받는 여성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농·어업인확인서 등의 경우 무료 발급



< 뿌리기업 확인요령 >

제3조(뿌리기업 확인신청 등) ① ~ ② (생략)

③ 확인기관은 신청인에게 뿌리기업 확인에 필요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개선방안

○ 뿌리기업 확인 신청·처리 절차 개선

※ 온라인을 통한 확인서 신청·접수 허용, 처리기간 단축, 공장등록증명서·사업자 등록증·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행정정보공동이용망(「전자정부법」) 활용을 통한 증빙자료 제출 최소화 등

⇒ 「뿌리기업 확인요령」 개정

현행	개선 (예시)
제3조(뿌리기업 확인신청 등) ①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 발급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뿌리기업 확인신청 등) ① 신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 발급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u>서류 접수는 확인 기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u>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확인기관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 확인기관의 장은 <u>신청서가 온라인으로 접수된</u>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수수료 징수 폐지

※ 수수료 징수 필요시 법령에 징수 근거, 납부방법 등 관련 절차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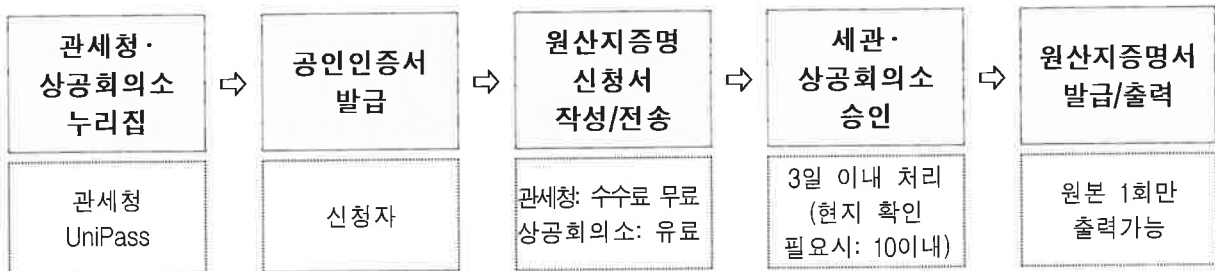
⇒ 「뿌리기업 확인요령」

현행	개선 (예시)
제3조(뿌리기업 확인신청 등) ① ~ ② (생략)	제3조(뿌리기업 확인신청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확인기관은 신청인에게 뿌리기업 확인에 필요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u>	③ <u><삭제></u>

□ 현 황

- 원산지증명서는 특정 물품이 FTA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로, 세관장이 수출자 등의 신청에 따라 발급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상대국에서 FTA(우대)세율 적용
 - *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EU, 페루, 터키, 미국,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와 체결한 FTA
 - 세관장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이후 오탈자, 수량·품목번호 등의 착오·누락이 있는 경우 정정발급 신청 가능

< 원산지증명 발급절차 >



<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

제11조(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 등) 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1.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2.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할 것

②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적정성 확인 또는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를 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④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기재방법,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제점

- 원산지증명서를 정정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당초 발급된 원본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수출기업의 불편·부담 가중

※ 다만, 아세안 회원국,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 사본 제출 허용(「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 원산지증명 정정발급 신청 관련 규정 >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시행규칙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① ~ ⑧ (생략) ⑨ (생략) 1. 재발급의 경우: 재발급 신청사유서 2. 정정발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원산지증명서 원본. 다만, 원본을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정발급을 받은 후 원본을 제출할 수 있다.	제35조(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① (생략) 1.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2. 원산지증명서 원본(다만, 아세안 회원국과의 협정 또는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정정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 4. (생략)

- 해외 수입업자에게 원본이 제공된 이후 기재 내용 오류 등 정정요인 발생시 원본 회수에 따른 부담
- 원본 회수에 장기간 소요(최소 1~2주)됨으로써 수출절차 지연, 해외 수입업자와의 마찰, 거래처 상실 등 수출 기업의 경쟁력 저하 초래

< 관련 민원 사례 >

- 한중FTA C/O*의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반면 이 기간을 초과하여 FTA검증 등의 사유로 중국 수입자로부터 FTA C/O정정요청이 있는 경우에 정정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다면 당초 발급한 FTA C/O를 정정 할 수 있는지 여부→(관세청 답변)원산지증명서 원본, 정정발급 신청사유서,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원산지증명서 정정 가능. (국민신문고, 2018.12.)

* C/O(원산지증명서) : Certificate of Origin

- **현재 원산지증명서를 정정 신청할 때 원본이 세관에 접수되어야 정정 발급 되고 있어 자동차부품을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저희로서는 시간 손실이 매우 크며 고객사의 컴플레인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경기 침체로 매출감소의 상황에 수입자와의 지속적인 거래유지를 위해서는 융통성 있는 원산지증명서정정발급 절차의 개선 필요.** (국민신문고, 2019.10.)
- **중국과의 협정 또는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세관 등)에서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제출되어야 정정발급을 해주고 있어 불편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FTA가 도리어 수출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수출기업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대표적인 규제라고 생각됨.** (국민신문고, 2019.11.)

□ 개선방안

○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신청 시 사본제출 허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현행	개선 (예시)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① ~ ⑧ (생략) ⑨ (생략) 1. ~ 2. (생략) 가. 원산지증명서 원본. 다만, 원본을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u>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정발급을 받은 후 원본을 제출할 수 있다.</u> 나. ~ 다. (생략) ⑩ ~ ⑪ (생략)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가. 원산지증명서 원본. 다만, 원본을 첨부하기 <u>곤란하거나, 긴급한 정정발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정발급을 받은 후 원본을 제출하거나,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u> 나. ~ 다. (현행과 같음) ⑩ ~ ⑪ (현행과 같음)

□ 현 황

- 보세구역은 외국물품, 통관물품의 보관·가공·전시·판매 등을 목적으로 개인이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설치·운영
 - (영업용) 타인의 물품을 보관·제조·가공하여 그 보관·가공료를 받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면적 1,000㎡ 이상 확보 및 일반적 시설요건 충족 시 특허
 - (자가용) 자기 물품을 보관·제조·가공할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면적 기준 없이 일반적 시설요건 충족 시 특허
 - (공동) 2개 이상의 수출입업체가 공동으로 자가 화물을 보관 하도록 특허 받은 구역으로 자가용 보세구역의 시설 요건 준용
- ※ 수출입기업들의 열악한 물류 인프라 여건 보완 및 물류시간 절감을 통한 비용 절감과 수출 진흥을 위해 공동보세구역 제도 마련

□ 문제점

- 공동보세구역 운영 취지를 저해하는 형식적인 제도 운영으로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용 부담 가중
 - 공동 보세구역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시설기준·요건 없이 자가용 보세구역의 설치·운영 기준을 준용함으로써 수출기업간 공동 이용 불가 사례 발생

<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

제14조(시설요건) ① 자가용보세창고(공동보세구역을 포함한다) 운영인은 장치·보관되는 물품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가용보세창고의 시설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조제2항, 제10조제4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 시설·장비 구비 등 업체마다 개별·독립적으로 요건 충족 시 공동 보세 구역 특허 가능 (공동보세구역 특허 및 운영에 대한 내부지침)

< 공동보세구역 특허 및 운영에 대한 내부지침 >

- (기본원칙) 세관장의 보세구역 특허는 신청자에 대해 독립적이고 고유한 행정행위이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자가용보세창고의 특허와 동일한 기준, 절차 적용
- (특허요건) 신규 특허시 관세법 및 관련고시에 규정된 보세사 채용, 운영인의 자격 등 자가용보세창고 특허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함
- (시설·장비) 보세화물 반출입 등 통관절차 이행을 위한 시설·장비(전산 시스템, WMS) 등은 운영인 별 구축
- (내부통제) 내부화물관리규정 등 내부통제시스템*은 반출입 화물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공동보세구역 운영인 별로 설정
 - 특히, 보세구역에서 발생한 도난·분실·멸실 등에 따른 책임관계를 내부 화물관리규정에 명확히 반영하여 특허신청시 제출
- * 보세화물 관리조직, 반출입 절차, 보관방법, 출입자 통제, 안전관리 등
- (특허기간) 공동보세구역 운영인은 개별적 특허요건을 갖추어 동시 특허 신청하고 가급적 공동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동일하게 부여
- (특허면적) 전체 창고면적 중 공동보세구역 운영인의 관리면적만을 특허 면적으로 하되,
 - 특허신청서 또는 특허장 교부시에는 전체 창고면적과 공동보세구역 운영인의 특허면적을 구분하여 표시
- (보세구역 명칭) 해당 보세창고가 공동보세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특허장 교부시 보세구역 명칭에 공동보세구역임을 표시
- 보세화물 관리 방법
 - (보세화물 구분 장치) 보세화물 장치면적, 장치구역 등은 공동보세구역 운영인간 명확히 구분 관리*(특허신청시 보세구역 도면 제출)
- * 창고 내 장치화물이 혼동되지 않도록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구분 장치하고, 출입구에 운영인 별 장치영역을 표시한 안내판 설치
- (특허수수료 부과) 공동보세구역 운영인이 관리하는 창고(야적장 포함)면적 비율에 따라 특허수수료 개별부과

□ 적용 특례

- (보세사 채용) 현재 보세사를 채용하고 있지 않는 공동보세구역 운영인은 향후 특허 갱신 신청 시까지 보세사를 채용하여야 함
 - 다만, 보세사를 채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관할 세관장은 보세사 채용을 조건으로 특허를 할 수 있으며, 운영인은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까지 보세사를 채용하여야 함
- (출입자 통제시설 등) 건물·토지시설, 외부침입 방지시설, 소방·전기시설 등은 공동보세구역 운영인간 공동으로 사용 가능
 - 다만, 해당 시설물의 소유주가 아닌 운영인은 시설물에 대한 사용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신청 시 제출
- (특허기간) 법규준수도, 임차기간 등의 사유로 특허기간이 상이한 경우 특허기간이 짧은 업체를 기준으로 특허기간 부여
- (장치면적) 공동보세구역 운영인 간의 특허(장치)면적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보세구역 수용능력 증감 처리

- 관세청 '고시'상 수출입업체 간 공동 이용 가능 시설에 관한 기준 미비로 보세창고의 비효율적* 운영 빈번

- * 업체간 통합사용 중인 일반창고는 적재 공간이 부족한 반면, 공동보세구역은 개별·독립적 시설요건으로 인해 1개 업체 밖에 사용할 수 없어 나머지 업체들은 공항·항만 주변의 영업용보세창고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 (권익위 실태조사, '20.6.)

< 공동보세구역 설치·운영 전경 >



< 업체간 통합사용 중인 일반창고 >



< 1개 업체만 사용 중인 공동보세구역 >

< 관련 민원 사례 >

- A업체는 현재 자가용보세창고를 특허 받아 사용 중이나, A업체 자가용 보세창고를 B업체와 같이 공동보세구역으로 특허 받아 사용가능한지? (답변) 공동으로 보세창고를 운영하려는 B업체는 보세사채용, 운영인의 자격, 시설·장비요건 등을 A업체와 별도로 갖추어야하고, 장치면적 및 장치구역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보세창고 내에 벽, 칸막이 등을 설치해야 함. (국민신문고, 2019.4.)
- 모회사와 자회사들은 생산 공정이 연결되어 있어 상호간 유기적으로 원·부재료 등의 판매·구매가 발생하며, 공장부지가 서로 연접해 있어 효율적인 부지(창고 등) 운영이 필요한 실정이나, 자회사들과 함께 보세창고를 사용할 수 없다보니 많은 물류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으니, 공동보세구역의 특허요건 및 시설요건 완화가 필요. (국민신문고, 2020.1.)

□ 개선방안

- 수출입기업의 공동 활용 가능한 '공동보세구역' 특허요건·기준 등 구체화
 - 출입자 통제시설 등 운영인간 공동 사용 가능 시설 등에 대한 설치·운영 기준 마련
- ⇒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 현 황

○ 보세구역에 반입된 수·출입 화물의 부패·변질, 상품가치 상실 등이 있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에 따라 반송·폐기

- 화주*의 부도, 인수 포기, 주소 불분명 등으로 수취 거부되어 상품 가치가 상실되면 세관장은 반입자**에게 폐기 명령(「관세법」 제160조)

* 화물적하목록에 수하인으로 기재된 자, 수출신고서에 수출자로 기재된 자

** 화물적하목록의 작성책임자(선박회사, 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

- 반송·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반입자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행정대집행 비용 부과·징수 (「관세법」 제277조)

□ 문제점

○ 화주의 부도, 주소 불분명 등으로 장기 방치된 보세화물을 반입자가 반송·폐기하려는 경우에도 일선 세관에서는 화주의 인감과 물품포기서 제출을 요구하는 관행 여전

※ 반입자에게 보세화물의 소유권(선하증권*)이 있음에도 화물의 인수를 사실상 포기한 화주의 인감증명서와 물품포기각서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

* 선하증권: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송화물의 수령·선적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 (선박회사 → 화주에게 발행)

○ 보세화물의 인수를 거부하는 화주로부터 인감증명서, 물품포기서 등을 반입자가 받아내기 곤란하거나 장기간 소요

※ 화주의 보세화물 포기 이유는 장기 방치에 따른 물품가치 상실로 시장성이 없기 때문으로 반송·폐기 명령을 회피하려는 화주에게 인감증명서, 물품포기서 등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이러한 관행으로 장기 방치 화물의 반송·폐기* 승인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체불 운임, 창고 보관료, 폐기비용 등)을 반입자가 부담함으로써 관련 민원 지속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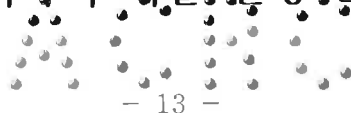
* 폐기대상 : 사람의 생명·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부패·변질된 물품,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 관련 민원 사례 >

- 중국파트너 포워더에서 2018.3.7. 물건을 보내 왔으나, 부산항에 입항한 지 수개월이 지났으나 화주 측에서는 화물을 인수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화물 체화료와 터미널 보관료만 4천만원이 되었으며, 터미널 등에서 화물인수 독촉과 대금청구를 저희 회사로 청구하고 있는 상황. (국민신문고, 2018.8.)
- 화물 컨테이너 18대가 우크라이나에서 2018.6.17. 수입되어 현재 BNCT에 체류 중입니다. 저희는 포워딩 업체로 코스코 선사를 통해 화물이 들어온 후 화주가 물건을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물건을 보낸 쪽에서는 화물을 포기하는 각서도 세관에 제출해 보고, 체화담당자를 찾아가고 전화해도 해결되지 않고 저희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국민신문고, 2019.12.)
-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화주 부도, 인수포기 또는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이 실질적인 화주가 아니거나 화주의 주소·거소 불분명 등으로 반입자와 보세구역 운영인이 이를 대행할 수밖에 없으나, 반송·폐기 시 당초 화주의 인감증명서와 물품포기각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사실상 화주 이외에는 반송 또는 폐기가 어려운 상황. (국민신문고, 2020.1.)
- 2015년경에 중국에서 컨테이너 2대의 화물을 인천항으로 가져 왔으나, 갑작스런 화주의 부도로 화물이 현재 선사CY에 보관되어져 있으며, 장기보관으로 인해 화물 가치는 이미 손실되어 폐기해야할 상황으로 저희 포워딩 업체로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국민신문고, 2020.3.)

□ 개선방안

- 화주의 부도, 소재 불분명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화주의 인감증명서, 물품포기각서 제출, 관행, 근절을 위한 지침 마련



□ 현 황

- 환경오염 측정대행업(시험·검사기관 포함)*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에서 정한 인력, 시설·장비를 갖추고 지자체 등에 등록 후 영업

* 대기오염물질, 실내공간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먹는물, 폐기물, 소음·진동, 토양오염물질 등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

- 개별 법령에서 정한 시설·장비 기준 등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 시 제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한편, 개별 법령에 따라 특정 분야 측정대행업 등록 후 다른 분야 대행업을 추가·병행 등록 시 공통 시설·장비를 중복해서 갖추지 않고도 등록 가능

< 환경분야 시험·검사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관련 법령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① 측정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지자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9]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중 개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③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신청 절차,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개별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자가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문제점

- 12개 오염측정 분야* 중 ▶실내 공기질, ▶악취의 경우 개별 법령상 공통 시설·장비의 대체 가능 규정 미비

- 이로 인해, 고가의 시설·장비(1,500만원~1억 5천만원)의 별도 구입·설치가 불가피하여 대행기업의 비용 부담 유발

< *공정시험기준 고시 대상 12개 대상 법률과 분야 >

대상 법률	대상 분야	비 고
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물질,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② 「소음·진동관리법」	소음, 진동	
③ 「실내공기질 관리법」	공기오염원인 gas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④ 「악취방지법」	악취	
⑤ 「물환경보전법」	폐수, 수질오염물질	
⑥ 「먹는물관리법」	먹는물	
⑦ 「폐기물관리법」	폐기물	
⑧ 「화학물질 관리법」	유해화학물질	
⑨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물질	
⑩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대행업 제도 없음
⑪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
⑫ 「환경보건법」	환경유해인자	

- 환경시험검사법령과 개별 법령의 대상 범위 불일치로 측정대행업 병행 기업 중 공통시설·장비 대체 가능 업종임을 인지하지 못해 행정처분·고발되는 사례도 발생

< 관련 민원 사례 >

- 측정대행업의 등록권자가 지자체, 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나뉘져 있다 보니 등록 절차가 제각각이고, 업체에서는 환경시험검사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공통장비·시설은 당연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등록권자 등의 현장점검 과정에서 위법 행위로 적발되어 범법자가 양산되고 있으며, 위법사항 해소를 위한 고가 장비·시설 추가 구입·설치로 중소기업의 재산성 악화 심화. (권익위 실태조사, '20.6.)

□ 개선방안

- 측정대행업(시험·검사기관 포함) 병행 등록시 공통 시설·장비에 대한 대체 규정이 없는 2개* 법령에 근거 마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개정 등

현행	개선 (예시)
<u>시험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u> 1. 시설: (생략) 2. 장비: (생략) 3. 기술인력: (생략) < 비교 > 1. ~ 5. (생략) <u><신설></u>	<u>시험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u> 1. 시설: (현행과 같음) 2. 장비: (현행과 같음) 3. 기술인력: (현행과 같음) < 비교 > 1. ~ 5. (현행과 같음) 6.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및 장비는 <u>「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의 오염물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검사 등의 방법에서 해당 장비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u>

- 환경시험검사법령 등에 공통시설·장비 대체 가능 대상 법령 일치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9] 개정

현행	개선 (예시)
<u>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u> 1. ~ 3. (생략) <비고> 1. ~ 4. (생략) 5. (생략) 가. ~ 카. (생략)	<u>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u> 1. ~ 3. (현행과 같음) <비고> 1. ~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가. ~ 카. (현행과 같음)

현행	개선 (예시)
<u><신설></u> <u><신설></u> <u><신설></u> 6. ~ 7. (생략)	<u>타. 「환경보건법」</u> <u>파. 「실내공기질 관리법」</u> <u>하. 「악취방지법」</u> 6. ~ 7. (현행과 같음)

※ 2개 법령 외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 [별표3] 공통시설·장비를 대체사용 가능하도록 개정(2019.7.6.) 완료

⇒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개정

현행	개선 (예시)
<u>환경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u> 1. (생략) < 비교 > 1. ~ 4의2. (생략)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자가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의2. ~ 7. (생략)	<u>환경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u> 1. (현행과 같음) < 비교 > 1. ~ 4의2. (현행과 같음) 5. 「환경기술 및 <u>환경산업 지원법</u>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 <u>화학물질 관리법</u> 」, 「먹는물관리법」, 「 <u>토양환경보전법</u> 」, 「 <u>환경보건법</u> 」, 「 <u>실내공기질 관리법</u> 」, 「 <u>악취방지법</u> 」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자가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의2. ~ 7. (현행과 같음)

Ⅲ. 조치 사항

□ 대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관세청, 환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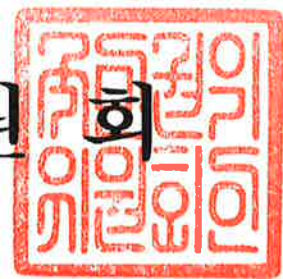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과제명	조치사항	조치기한
① 뿌리기업 확인서 신청·발급 절차 개선	○ 뿌리기업 확인신청·처리절차 개선(우편→온라인) ⇒ 「뿌리기업 확인 요령」 개정 ○ 수수료 징수 폐지 ⇒ 「뿌리기업 확인 요령」 개정 등	2021.06. (산업부)
② 수출기업의 원산지 증명서 정정 발급 절차 간소화	○ 원산지 증명서 정정 발급신청 시 사본 제출 허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21.06. (기재부)
③ 공동보세구역으로 특허 받은 시설의 사용요건 구체화	○ 수출입기업의 공동 활용 가능한 ‘공동보세 구역’ 특허요건·기준 등 구체화 ⇒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2021.06. (관세청)
④ 보세구역 장기 보관된 물품의 불합리한 처리 관행 개선	○ 화주의 부도, 소재 불분명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화주의 인감증명서, 물품포기 각서 제출 관행 근절을 위한 지침 마련	2021.06. (관세청)
⑤ 환경오염 측정 대행 기업의 운영 요건 완화	○ 측정대행업 병행 등록시 공통 시설·장비에 대한 대체 규정이 없는 법령에 근거 마련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 개정 ○ 환경시험검사법령 등에 공통시설·장비 대체 가능 대상 법령 일치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2021.06. (환경부)

정 본 입 니 다 .

2020. 10. 27.

국 민 권 의 위 원



A C B C